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5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5호, 2012.10.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별표8”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6”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부표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1) 책임기술자	[45] (18)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가) 등급	-	
	(나) 경력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8 5 5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18)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경력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6 5 5	
	(3) 분야별 참여기술자	(9)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등급	(25) 2	○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경력 (다) 실적(건수)	3 4	
	(1) 건수 (2) 금액	(12) (13)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2) 입찰참가제 한, 업무정 지 (3) 재정상태 건설도	[10] (4) (3) (3)	- <u>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u> -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 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 참조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 개발·사용 실적 (2) 투자실적	[10] (2) (8)	1) 「 <u>건설기술 진흥법</u> 」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 특허 : 0.6점 / 건당 2)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 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마. 업무 중첩도	(1)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 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	[10] (6)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 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 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비고

1.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별지2]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를서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건축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직사태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실적을 말한다.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보완’ 또는 ‘부실’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대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별표8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 제4조 (생략)</p> <p>[별표] 1. 분야별 평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평가항목</th> <th>평가요소</th> <th>배점</th> <th>세부평가방법</th> <th>평가항목</th> <th>평가요소</th> <th>배점</th> <th>세부평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다. 신용도</td> <td>(1)점검·진단 실시결과</td> <td>(4)</td> <td>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td> <td>다. 신용도</td> <td>(1)점검·진단 실시결과</td> <td>(4)</td> <td>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td> </tr> <tr> <td>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 <td>(1) 개발·사용실적</td> <td>(2)</td> <td>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td> <td>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 <td>(1) 개발·사용실적</td> <td>(2)</td> <td>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용도	(1)점검·진단 실시결과	(4)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다. 신용도	(1)점검·진단 실시결과	(4)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사용실적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사용실적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6에 따라-----</p> <p>제2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별표] 1. 분야별 평가기준</p> <p>-----</p>	<p>-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p> <p>-----</p> <p>-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이 평가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평가규정 개정 ('13.9.17)에 따른 용어수정</p>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용도	(1)점검·진단 실시결과	(4)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다. 신용도	(1)점검·진단 실시결과	(4)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사용실적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사용실적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p> <p>I. 일반사항</p> <p>1.~3. (생략)</p> <p>4.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u>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가.~다. (생략)</p> <p>5.~7. (생략)</p> <p>8. 발주청은 <u>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등의</u>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p> <p>9.~10. (생략)</p> <p>II. -----</p> <p>1.~2. (생략)</p> <p>3. (생략)</p> <p>가.~마. (생략)</p> <p>바. <u>법 제6조의2의</u> -----</p> <p>-----</p> <p>사. (생략)</p> <p>4.~6. (생략)</p> <p>7. (생략)</p> <p>가. (생략)</p>	<p>[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p> <p>I. -----</p> <p>1.~3. (현행과 같음)</p> <p>4. -----</p> <p>---- 심의하기 위하여 「<u>건설기술 진흥법</u>」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u>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u>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u>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가.~다. (현행과 같음)</p> <p>5.~7. (생략)</p> <p>8. 발주청은 <u>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u>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p> <p>9.~10. (생략)</p> <p>II. -----</p> <p>1.~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가.~마. (현행과 같음)</p> <p>바. <u>법 제21조의</u> -----</p> <p>-----</p> <p>사. (현행과 같음)</p> <p>4.~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상급기관에서 기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심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함</p> <p>-----</p> <p>-세부평가 기준에 없는 항목 삭제</p> <p>-----</p> <p>-특허 및 신기술실적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 -----.</p> <p>다. (생략)</p> <p>8. (생략)</p> <p>가. (생략)</p> <p><신설></p> <p><신설></p> <p>나. 투자실적 평가</p> <p>1)~3) (생략)</p> <p>9.~11. (생략)</p>	<p>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 ----- -----.</p> <p>다. (현행과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p>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p>라. 투자실적 평가</p> <p>1)~3) (현행과 같음)</p> <p>9.~11. (현행과 같음)</p>	<p>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p>